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등〉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49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등	8
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5
4. 벌칙 및 과태료	18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2.

3. 회부연월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관련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	---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¹⁾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²⁾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하고 있는바³⁾,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⁴⁾.

- 최근 대전 초등학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⁵⁾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학교 내 CCTV 통합관제를 통한 학교 안전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관련 통합관제 센터⁶⁾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⁷⁾,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로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에 관하여는 현행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21페이지

5) 2025.2.10.(월) 16:30~017:30경,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참여 학생 학교 내 피살사건 발생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동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2209193)」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법안 심사 시 병합심사할 필요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7)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안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⁹⁾에서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연계하여 통합관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대로 그 중 8.3%에 해당되는 3만 대가 통합관제 중이고, 대부분 학교담장, 교문, 주차장 등 학교 외부 CCTV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2025.6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시도에서 통합관제 운영

[학교시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현황]

(2025.2.11.기준)

학교급	CCTV 설치 수(대)	통합관제 CCTV 수(대)	통합관제 CCTV 비율(%)
초	131,119	25,872	19.7
중	105,925	3,280	3.1
고	122,139	776	0.6
특	6,692	293	4.4
소계	365,875	30,221	8.3

(자료: 교육부)

-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관제 확대 시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관제인력 등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신중검토

- 「학교폭력법」 제20조의7에 따라 학교 내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고, 이에 따라 13개 시도에서 통합관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

【교육청】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학교) : 신중검토

-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활동 전반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연계는 학생인권 · 교육활동 침해 우려 및 범죄예방 효과 의문
-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은 막대한 예산 낭비
- 학교 관제 범위·대상에 대한 학교 현장 혼란 야기
- 통합관제연계는 의무규정보다, 학교별로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이 적절

【교원단체】 : 신중검토

- (교사노조연맹)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구성원 인권 침해 우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1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영상정보처리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 이에 해당됨¹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¹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제한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현행법상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초·중등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설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¹²⁾,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법 률	조 문	목 적	설 치장소
초·중등교육법 ¹³⁾	제30조의8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학교시설 (학교담장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¹⁴⁾	제20조의7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외
아동복지법 ¹⁵⁾	제32조	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부지 외곽경계선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학교체육 진흥법 ¹⁶⁾	제7조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실내외 훈련장, 학생선수기숙사,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¹⁷⁾	제8조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1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 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자료(2025. 2. 11.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6만 대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실내 설치 건수는 18.5만 대로, 실내 설치 건수 중 복도 및 계단은 11.9만 대, 현관 등 로비는 2.1만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은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가 설치되어 있음¹⁸⁾.

1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 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6)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8)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21페이지

□ 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현행법 안에서도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토록 하고 있어 학교별로 설치 사례가 상이하고, 특히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학생 이동이 많은 교실·복도·계단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¹⁹⁾.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교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법 체계내에서 구성원 간 동의를 통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율적인 설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 동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법안심사 시 병합심사 필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241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600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18호)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이미 학교내 CCTV는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 CCTV 설치·관리 주의사항, 영상정보 보관기간 등은 이미 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개정안의 제안취지인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 담보를 위해서는 “CCTV 필수설치 장소, 방과후 돌봄학생 안전확보, 학생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학교) : 신중검토

- 설치 장소·수량 등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실 등 학생과 교직원의 지속적 생활 공간에 설치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임
- 보호자의 잦은 열람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교육활동 지장 우려, 학교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작용
-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의무와 안전관리 조치는 예산·인력 부담 증가
-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검토 필요

【교원단체】 : 신중검토

- (교사노동조합연맹)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구성원 인권 침해 및 학내 분쟁 발생 우려

[CCTV 설치 의무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CCTV로 확보된 영상정보 열람 금지, CCTV 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12(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

	<u>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u> <u>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30조의11제3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아울러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 유사

20)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례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4. 벌칙 및 과태료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조작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및 제6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30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0조의12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③·④ (생략) 제68조(과태료)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②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²¹⁾²²⁾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5

21)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참고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2025. 2. 11. 기준)

학교 급	학교수	설치장소																			
		실내											실외								총계
		교 실	급식실	보건 실	사형 각실	강당/ 체육관	복도/ 계단	로비/ 현관	특별실	물품실 주변	기타	소계	교문	건물 출입구	주차장	옥상	운동장	담장 주변	기타	소계	
초	6,284	233	887	55	100	2,458	16,885	8,889	795	1,767	4,939	37,008	14,014	18,569	14,833	1,960	15,054	9,140	20,541	94,111	131,119
중	3,286	213	1,157	74	262	2,024	45,506	5,881	1,980	84	5,920	63,101	5,590	8,004	6,895	1,163	6,451	5,416	9,305	42,824	105,925
고	2,380	407	1,588	74	314	2,121	54,564	6,227	3,467	60	12,661	81,483	5,061	7,750	5,689	1,577	4,296	5,777	10,506	40,656	122,139
특	196	63	80	8	12	140	2,356	438	132	56	557	3,842	373	493	580	97	327	326	654	2,850	6,692
계	12,146	916	3,712	211	688	6,743	119,311	21,435	6,374	1,967	24,077	185,434	25,038	34,816	27,997	4,797	26,128	20,659	41,006	180,441	365,875

(자료: 교육부)